



고객과의 신뢰가 제일의 가치 정확한 컨설팅 서비스로 미국 세금보고 해결한다

한아름 유에스텍스서비스(US TAX SERVICE) 대표미국회계사

2016년 9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발효됐다. FATCA는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기존의 자발적인 신고가 부진하자, 지난 2010년에 새롭게 도입된 국가 간 정보교환 방식(Model IGA) 제도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렇듯 FBAR와 FATCA를 실시하고 있어,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매년 소득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에 한아름 유에스텍스서비스(US TAX SERVICE) 대표미국회계사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미국 세금보고, FATCA와 FBAR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위클리피플>은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US TAX SERVICE를 찾았다.

취재_이선진 기자, 김유위 기자 / 글_김유위 기자

미국 납세무자의 역외탈세 방지, FATCA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FATCA의 골자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한층 강화된 방안이다. 이러한 국제적 금융정보교환은 미국의 스위스 은행 빗장풀기에서 본격 촉발됐다. 미국 국세청은 2007년 캘리포니아 부동산 재벌 이고르 올레니코프(Igor Olenicoff)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스위스 UBS 은행이 탈세를 도운 사실을 포착했다. 미국 국세청은 UBS 은행을 조사해 스위스에 비밀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자가 52,000명, 그 액수는 148억 불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미국 정부는 2009년 UBS 은행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300여 명의 고객정보를 제공받고 나아가, 52,000명 고객정보의 제공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스위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2010년 1월 미국 정부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일체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맞섰다. 첨예한 대립과 협상 끝에 스위스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비밀계좌를 보유한 약 7,500명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스위스 의회에서 2010년 6월 최종 인준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국제적 금융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가장 발 빠른 행보는 미국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의 입법에 성공했다.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로, 만약 외국 금융기관이 보고의무를 불이행하면 그 금융기관의 미국 투자자산소득에 대해 30%의 징벌적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막막한 미국 세금보고, 어떻게 해야?

한 회계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외국공인회계사로, 미국에서부터 회계사 일을 시작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회계를 비롯하여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가맹 비즈니스, 제조업 어카운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나갔다. 이후 귀국하여 국내 거주 시민권자들의 미국 세금보고와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의 세무, 그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투자 이민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민 등 국내 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들은 어



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세금보고 절차에 막막해 하고 있다. 이에 한 회계사는 미국 세금보고 세미나를 열거나 비즈니스 칼럼을 게재하는 등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유에스텍서비스에서 개최한 미국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 세 가지와 한 회계사가 주는 '미국 세금보고 관련 팁'을 정리했다.

Q.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나?

A.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근로소득 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고자는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Q.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FATCA)를 매년 진행해야 한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미국에 따로 내는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해외금융계좌보고의 경우 계좌 잔고의 50% 또는 10만 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해왔다면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s)를 활용해 세금보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16년도 말부터 실질적으로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어,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Q. 이미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한국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누락했다.


A. 정정 보고 양식인 1040X를 이용하여 수정 신고하면 된다. 누락한 이자소득을 포함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시 계산되며, 이때 전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차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수정보고의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뢰가 제일의 가치

미국에서부터 회계사 일을 시작했고, 미국의 선진화된 회계 시스템을 익혔던 한 회계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자, 한 회계사는 “고객과의 신뢰”라며 강조했다.

“미국의 회계 시스템은 한국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즉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죠. 만약 고객에게 문제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사후 처리까지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회계 시스템의 바탕에는 ‘고객과의 신뢰’를 제일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에도 신

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금보고의 경우 매년 진행해야 하는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간혹 잊어버리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고일정을 잊지 않도록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거나, 설날 인사카드를 보내면서 일정을 안내하는 등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컨설팅 서비스로,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는 한아름 회계사. 끝으로 한 회계사는 “앞으로 유에스텍서비스가 미국 금융보고를 비롯하여 해외 진출시 금융자산, 컨설팅 업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회계법인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Profile

경희대학교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인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외국공인회계사
前 NKSF LLP 회계법인 근무 in CA
前 Yogurtland Franchising, Inc. in CA
前 Mos Tax Consulting in Korea
現 US Tax Service 대표 미국 회계사